

2條에 檢査委員의 資格을 規定하여 麻浦區 議會 議員이 아닌 者로서 檢査委員을 委囑 하고자 할 때에는 麻浦區에 居住하고 있는 者 中에서 公認會計士 職에 3年以上 從事 하고 있거나 서울 特別市 또는 서울 特別市 自治區에서 豫算 또는 會計關係 事務를 5年以上 擔當한 經驗이 있는 者로서 5級以上의 職에 있었던 者로 하며, 第3條에 選任方法을 規定하여 議會는 會計年度 出納 閉鎖 後 檢査委員을 選任하고 檢査委員 中 責任者는 議員으로 하며, 第4條에 決算 檢査期間 및 檢査의 意見書 提出을 規定하고 第7條에 議員이 아닌 檢査委員에게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實費辨價을 하도록 規定하였 습니다.

條例案의 各 條文別 細部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자격)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자.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제 3 조(선임방법) ①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 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마포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제 4 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 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 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 6 조(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 7 조(실비변상) ①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규정 및 특근비 지급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비협조에 대한조치) 검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마포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채납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 10 조(검사위원의 제재) ① 검사위원이 제

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의장은 감사위원이 결산검사를 대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일 동 박 수)

○議長金元泰 지금 蔡雲錫 議員님께서 提案說明한 서울 特別市 麻浦區 議會 決算 檢査委員 選任, 運營 및 實費辨償 條例案은 여러 議員님들께서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麻浦區 議會 決算 檢査委員 選任, 運營 및 實費辨償 條例案에 대하여 여러 議員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議員 席 없습니다.

○議長金元泰 이의가 없으시면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다음은 議會規則 45條 1項에 의하여 會議錄에 署名할 議員 2名을 選出하고자 합니다. 選出方法은 選出된 議員이 한 會期동안만 署名 捺印하도록 되어 있어 가능한 한 最年少 議員부터 順次的으로 選出코자 하며 이번 第1回 臨時會議에서는 最年少者인 田炳萬 議員과 尹東鉉 議員을 署名議員으로 選出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니까?

○議員 席 없습니다.

○議長金元泰 이의가 없으시면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우리 31名의 麻浦區 議會 議員이 住民의 輿望에 副應하는 活動을 펼쳐나감으로써, 麻浦區 議會가 地域의 發展과 住民의 福利를 實現하고 信賴받는 自治行政을 具現하는 民主 發展의 礎石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第1回 臨時會議가 순조롭게 進行되도록 協調해 주신 議員여러분에게 感謝를 드리며 第1回 麻浦區 臨時會議의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出席議員

金 元 泰 黃 泰 植 曹 熙 太

宋 潤 錫	金 星 煥	朴 炆 緒
李 天 揆	李 鍾 萬	李 奉 衡
具 又 石	韓 賢 德	金 鍾 烈
沈 載 昶	孫 龍 浩	洪 性 煥
俞 南 烈	金 汝 泰	李 宗 一
鄭 然 宇	金 相 烈	李 康 一
金 東 暉	蔡 雲 錫	尹 東 鉉
洪 吉 杓	田 炳 炳	尹 東 正
金 裕 顯	尹 明 奎	尹 權 五

(다음 「페이지」에 계속)